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조제3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</li> <li>2. 법 시행령 <u>제268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li> </ol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. (생략)</li> </ol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/b>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조제3항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</li> <li>2. 법 시행령 <u>제268조제4항</u>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</li> </ol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2.(현행과 같음)</li> <li><u>3. 환매조건부 매수</u></li> </ol>
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</u>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<b>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</p> <p>1. 2.(생략)</p>	<p><b>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1. 2.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</p>	<p><b>제41조(환매수수료)</b></p> <p><u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&lt;삭제&gt;</p>

<p><u>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‘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’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~④(생략)</p> <p>⑤ 수익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</u></p>

<p>③ <u>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④(생 략)</p>	<p><u>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③ <u>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</u>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 설&gt;</p>	<p><u>부 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